

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→ 2002-19
------	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2 3. 18.

제안자 : 자치행정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의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 골자

- 김제시장이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“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”을 “지방행정에 관한 자문”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3호)

3. 따로 붙임

-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수정안 대비표

김제시 조례 제 호

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중 “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”을 “지방행정
정에 관한 자문”으로 한다.

지방행정동우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수정안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보조금등의 지원) (생략) 1. ~ 2.(생략) 3.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브즈사업 4. (생략)	제2조(보조금등의 지원) (제정안과 같음) 1. ~ 2.(제정안과 같음) 3.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4. (제정안과 같음)

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

의안	2002-19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. .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제정사유

-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육성·장려함은 물론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함.(안 제2조)
-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토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3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지방행정동우회전라북도지회지원조례
- 입법예고(2002. 2. 1~2002.2.21)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- 기타(사전계획서 결재여부) : 여

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(이하“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”라 한다)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조금등의 지원) 김제시장은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봉사활동
2.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
3.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
4.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3조(사업계획의 제출)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조사업 실적보고등) 김제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